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동소관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(세무과)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삭제(안 제6조)
- 나. 항공기의 취득이나 매도 등은 우리구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조항 삭제
(안 제26조)

3. 관계법령

지방세법 제3조 및 제4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소속공무원 또는 동장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7조중 “제23조 내지 제26조”를 “제23조 내지 제2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26조(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항공기의 종류,명칭,제조년월 일,형식,용도,이륙중량,적재능력,취득가격,과세사실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항공기를 취득한 때 2.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 에서 사용하게 된 때 4.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 항공기로 된 때 5. 과세 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	<p>제6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 -----</p> <p>-----</p> <p>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<u>제23조 내지 제26조</u>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 -----<u>제23조 내지 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